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2

2018-2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아산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토론회 1건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발의 기자회견 등 7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하천법 등 4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기도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질의 1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5)
-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8)
- ▶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 ▶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촉진 조례 (13)
-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
- ▶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1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21)
- ▶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3)
- ▶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27)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아산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토론회 (30)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발의 기자회견 (41)
- ▶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방향 정책 간담회 (43)
- ▶ 대구광역시의회 달성군 교육현안 해결 간담회 (44)
- ▶ 경기도의회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45)
- ▶ 강원도의회 양성평등연구회, 성평등 의정활동 워크숍 (47)
- ▶ 경상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48)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자문위원 채용 (50)

최근 제·개정 법령

- ▶ 하천법 (52)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4)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56)
- ▶ 평생교육법 시행령 (58)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경기도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질의 (6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행 2018.2.2.] [강원도조례 제4249호, 2018.2.2., 제정]

□ 주요목적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지원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10.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11.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⑦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

③ 도지사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5.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6. 청소년 동아리활동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3.8.] [부산광역시조례 제5712호, 2018.2.7., 제정]

□ 주요목적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간접흡연”(이하 “간접흡연”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입주 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2.9.] [대전광역시조례 제5106호, 2018.2.9., 제정]

□ 주요목적

대전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명장”이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명장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명장 추천) 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청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장
3. 시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5.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명장 선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3백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제7조(명장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대전광역시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8조(의견제출) 시장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나 제7조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법인·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촉진 조례

[시행 2018.2.19.] [충청북도조례 제4132호, 2018.2.19., 제정]

□ 주요목적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이하 “LED” 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급의 필요성
2.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
3.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 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도지사는 신축건물과 LED조명 교체 시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2.22.] [전라남도조례 제4649호, 2018.2.22., 제정]

□ 주요목적

일제 강제동원 등에 따른 희생과 피해에 관한 역사유적 발굴·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強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유적”이란 제1호의 기간 중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 장소나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적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적의 발굴 등) 도지사는 유적의 발굴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보존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증언 등의 수집·연구·관리·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학술 사업
5. 그 밖에 유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계적인 유적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일제강점기 등 유적의 발굴·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6.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8.2.2.] [전라북도조례 제4514호, 2018.2.2., 제정]

□ 주요목적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아닌 교원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교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
-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2.2.]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272호, 2018.2.2., 제정]

□ 주요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 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광역시대덕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2.22.]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925호, 2018.2.22., 제정]

□ 주요목적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기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25에 설치한다.

제4조(기능) 전문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원배치 및 자격기준) 전문기관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 1명

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3. 상담원: 6명 이상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사무원: 1명 이상(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요 인력)

제6조(시설 기준) 법 제45조 및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가.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할 것

나.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 것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 것

3. 심리검사·치료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 것

나.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 것

다.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 것

제7조(자체운영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직·인사·급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자체운영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장부 등의 비치)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4. 아동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서류

제9조(상담 및 예방교육)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주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아동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청소년육성재단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안양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학대 예방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운영 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전문기관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점검한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3.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시행 2018.2.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0호, 2018.2.2., 제정]

□ 주요목적

괴산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세대당 3,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비는 논·밭 구분 없이 ㎡당 최대 100원 이내로 하고, 작업별 대행료는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 정한다.

제8조(지원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연1회 지급한다.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 받는 경우
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아산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18. 2. 8.(목), 14:00~16:00 /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I 총 평

- 아산시의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아산의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아산시 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의 자원활용·시설확충·예산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 아산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민·관의 토론 및 협의를 통한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기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II 주요 논의내용(요약)

1 주제발표

<임승휘 교수(선문대학교)>

-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발전은 도시 및 지역 경제의 재건과 지역문화의 부흥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후기 산업시대의 패러다임.
- 역사적·산업적 유산의 보존 그리고 문화관광과 도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노력 필요(사례 프랑스 낭트, 영국 리버풀)
-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발전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 공유와 문화예술 생산·소비 잠재력에 대한 냉정한 조사분석 및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력 양성
-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시설투자는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사회적 경제·문화예술관광 활동의 유기적 관계수립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
- 자유로운 창작과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아산을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2 자유토론

- 市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다보면 항상 부족하여 늘 市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임에도 늘 예산을 가지고 실감이 할 때마다 예술인의 한사람으로 서글픔을 느낌. 40여년간 예술은 했지만 40년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을 항상 부족함.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질의 : 이기은 아산예총 회장]

- ⇒ 문화예술이나 복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올해는 원칙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아산시에는 문화재단, 아산예총, 문화원, 시립미술관, 시립합창단 등이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동시에 서로 협업이

안 되면 같은 행사를 여러 곳에서 하는 모습도 있어 예산을 똑 같이 나누어 주는 방법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전문가 집단들만 예술활동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하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려고 함.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재단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시민·예술인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 문화재단은 사업을 기획하고 서울단체를 섭외해서 큰 행사를 하는 경우 등이 이문화재단의 역할로 비쳐져서 시민·예술인들은 재단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함.

발제교수님 말씀대로 콘테츠가 중요하고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靑陽도 문화예술공간이 있는데 아산시는 없다? 道에서나 이번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내실꺼라 믿으며, 위치는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그런 공간에 전문 예술가 집단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동호인들, 현대·삼성도 있으며, 서울·대구 등 외부에서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겠음

[답변 : 이상득 아산시 문화관광과장]

- 道에서는 어떻게 예술인들을 지원을 해 주시는지 궁금하며, 신청만 한다면 다 주시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하면 인정이 돼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질의 : 고천규 지역문화연구소장]

- ⇒ 충남도에서는 道에서 직접하거나, 충남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임.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 사업별로 공모기간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1/4분기 안에 다 이루어지며, 남은 9개월 정도는 사업을 진행

[답변 : 허창덕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

- 강사 고용문제의 불안함.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담보되어야 편안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어려움도 있고 할

동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됨.

4차산업 핵심 키워드가 문화고 창작활동이라고도 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나? 과연 4차산업이 실현되고 있는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발전을 위해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현시점에서 이대로 지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모았음.

창작플랫폼이라는 형태의 형식에 유형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거기에 필요한 세가지를 가지고 왔음.

첫째, 지역작가가 아산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행정적 지원이 단체로만 주어지는 형식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자체개발에 대한 부담이 큼 플랫폼을 통한 문화 공모가 활성화가 되면 상품개발에서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둘째, 아산은 30만 인구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임. 지역 예술가들이 이런 기반시설을 통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예회관, 어린이 미술관,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등 공간과 프로그램이 함께 있어서 지역예술인들과 시민 모두가 지역에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면 함.

셋째로 지역예술인 및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아산만의 문화예술 특구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비상함과 동시에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바람.

진정 예술인들을 돕는 것은 잠깐의 이벤트가 아닌 것 같으며, 스스로 일해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봄. 단지 공간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생산자. 문화예술 소비자. 문화예술 행정이 결합된 플랫폼이 구축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말 4차 문화혁명이 아산시로부터 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임.

[질의 : 안소연 충남예술인협의회 이사]

- 이순신 축제, 짚풀문화제 등 항상 축제 이야기를 하다보면 예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야 하는데, 축제 지역문화 활성화에서는 많이 주도가 되어야 하느냐? 민간인 주도에 관이 함께 서포트를 해줘야 하느냐? 고민을 하게 되

는데 이 부분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 고천규 지역문화연구소장]

⇒ 축제는 놀이이고 놀아야 하는데 놀고 싶을때가 있고 놀아야 말로 자발적인 인간의 행위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형식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놀이가 집단화 되게 되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됨으로 이론적으로는 民이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봄.

현실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세기 이전에도 놀이문화가 있었을 텐데 그 때 官이 주도 했었겠는가. 민중들에 의한 행사였을 것임. 산업화 이후부터 官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라고 보여 짐.

관에서 해야할 부분중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엇을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에 어떤 테마에 어떤 지역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오면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보 되기 쉬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이 내려지고 한번쯤 시도해 봐야 할 것으로 어떠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통해야 함.

[답변 : 임승휘 선문대학교 교수]

○ 道の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재단을 통해 공모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200~300백만원 정도임.

그 금액으로는 전시회하기도 어렵고, 문화행사하기도 어려우니 선택과 집중으로 하자. 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음.

또, 거버넌스 이야기 하셨는데 환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예술인들과 자주 만나고 있고 관심도 있음.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민간 영역을 관과 연결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따로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지원과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官은 官대로 민간(예술인)은 민간대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었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관협치 임.

협치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관과 민이 같이 모여서 대화해보자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기 위한 제도가 거버넌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민관협의체)을 만들어야 하겠다, 분야별 문화예술인들과 아산시와 함께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지만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설문제(문예회관)등 시청에서 주도해서 알아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문예회관은 이런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 윤지상 도의원]

3 청중토론

- 2014년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 이순신이라는 콘텐츠가 나와서 아산시에 배우 최민식씨 메니저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전혀 리액션이나 피드백이 없었고, 부가가치·고용효과·관광효과 이러한 브랜드 가치 효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관련 조치가 없었는데 아산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 서울의 인사동이나 문래동 등과 같이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관한된 생각은 어떤지?

[질의 : 영화인]

- ⇒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영화인이 오셨고, 지역에 영화인을 모시고 촬영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배우 최민식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아산을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술인 마을 조성도 고민하고 있고, 도고 인근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와 건축부서와 이야기가 되고 있음.

市에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예술인을 모셔서 오는 것은 아니며, 서울에서 웹툰작가, 언론보도 작가 등이 모여서 추진하여 마을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 실현가능한 것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 이상득 문화관광과장]

- ⇒ 내포신도시에 영화인 마을이 조성됨. 올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아산시 문화관광과와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를 활용하고자 협의할 예정이며, 내년도 이순신장군 탄신기념일을 즈음해서 게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답변 : 허창덕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

- 아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아산만의 색깔과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함. 아산의 뛰어나고 가치 있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 뒤섞여 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으로 아산으로 하는 주제가 연차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으며 이러한 대표적 문화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음.

(예시 : 2018년 온양온천 해, 2019년 이순신 장군의 해, 2020년 맹사성 해 등)

[질의 : 교육컨텐츠개발사업가 인재육]

- ⇒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어려우며, 한 번에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중해 마을을 활성화 시켜 볼 계획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시간을 내어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요청 드림.

세부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꼼꼼히 챙기고 노력하겠으며,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2018년 아산시 문화예술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인이 알기 어려웠던 공모사업, 도 문화재단의 사업 등을 모아서 알려 드리고 예술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문화산업진흥원에 3억원 정도 출연)

문화예술단체 중 리더가 열의가 있으면 그 단체는 활성화되고 꿈도 꾸지만 불평불만이나 하고 돈이나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수고하신 예술인들에게 댓가가 적어 미안해 할 수는 있겠지만 무료 재능기부는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며, 열심히 하는 단체를 위주로 가능하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답변 : 이상득 아산시 문화관광과장]

⇒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목표한다면 예술인 거주지나 문화예술지구 는 주민과 지리적·거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에 반대 하는 편임.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은 우리 가까이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후한 지역, 우리 주변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든지 특구라고 부르든지 문화기술 클러스터 기술이라는 단어가 아트 임.

예술가의 거주 창작 유통 교육 소비가 집중되는 지리적공간이 너무 멀지 않는 곳에 쉽게 찾는 곳에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지중해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도색보다는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것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든다면 꽃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없되는지, 꽃 중에서도 라벤다 같은 꽃 을 지중해 마을 곳곳에 한 가지의 꽃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또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짐.

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함, 다만 너무 역사적인 사실에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음.

온양온천이란 콘텐츠를 10년 넘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변함없이 없는 것은 노력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보임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임승휘 선문대학교 교수]

⇒ 농협에서 로컬푸드마켓이 있듯이 문화회관도 좋고 넓은 장소도 좋지만 작은 공간들이 있어 로컬문화마트가 생긴다면 예술인들은 물론이고 문화 향유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함.

앞으로 관에서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개선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의 답은 관과 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가 함. 토론회가 아니라 협의체로 해서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씩 모이는 자리가 답이라 생각 함.

[답변 : 이기은 아산시 예총회장]

- ⇒ 발제에서 문화는 돈인가 하셨는데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고 핵심목표라 생각하는데 문화를 강조하면 직접적인 영향이나 혜택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민간에서 이순신테마파크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촬영장도 만들고 다양한 병영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고 상품으로도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문화가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다양한 문화시설,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온천박물관을 제안을 하고 있음.

당장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시설보다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생각해 보면 생활 문화가 아닌가.

외지에서 가수를 초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생활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다음에 그런 문예회관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함.

시설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활성화가 안된다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일단은 콘텐츠, 인프라, 생활문화가 확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문화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함.

[답변 : 윤지상 도의원]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아산지역의 문화자원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2. 아산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전략 및 활성화 방안 필요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아산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아산의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기

<설문조사 결과>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37.5%	62.5%	-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이 충실했는가	12.5%	75.0%	12.5%
일반 참석자와 질의답변 등이 원활하였나	12.5%	75.0%	12.5%

○ 설문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설문에 응한 방청객은 8명에 불과 하였으나,

- 응답자 100%가 지역현안 해결 및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내용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도는 87.5%가 만족한 반면, 12.5%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에 있어 토론시간의 지연에 따라 질의시간을 단축 운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짐.

⇒향후, 적정하게 발제 및 토론 자료를 작성하여 청중과의 질의 응답시간 을 조정하고자 함.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월 8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실 맺어”

서울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1월 1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현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연서를 받아 2월 8일 대표발의 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병두, 우상호 국회

의원도 발의에 동참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 지방분권 7대 과제

- ①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②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자치조직권 강화
- ④자치입법권 강화 ⑤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전현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 발의와 조속한 통과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확립되길”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법(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방향」 정책간담회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7일(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간담회는 대전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전의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 대학, 그리고 대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대전의 성공적인 4차산업혁명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추진전략과 과제들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전의 4차산업혁명 정책방향과 지역 벤처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주체 중에 하나인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대전의 4차산업혁명 추진전략들에 있어 기업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판로 지원,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역의 대학과 출연연구기관들에서는 대전을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부기업들을 대전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며, 그 대안 중에 하나로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테스트-베드 중심도시로의 대전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간담회를 주재한 김동섭 의원은 대전이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동력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만큼, 핵심주체인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대전시를 비롯한 지원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적극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전시의회가 이들 핵심 주체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4차산업혁명 특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과 공조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달성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교육 정책과 지역 발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 현안 간담회가 2월 23일 오후 2시, 대구세천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되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배재훈)는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구 전역에서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성서5차 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으로 급격히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과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학생 안전 등에 대한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달성군 세천·서재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달성군 출신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의 주재로 진행 되었으며, 달성군 지역 추경호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경찰서 등 교육 관련 관계기관들과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모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열띤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세천·서재지역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유치원·어린이집 증설 요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중·고등학교 신설, 버스노선 증편, 학생 통학로 교통 안전 및 치안 강화 등 갖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대구시의회 최재훈 의원은 “달성군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고 평균 연령이 38.5세로 나타날 만큼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간담회를 할 때 마다 이들이 가진 교육 열기 또한 매우 높음을 절실히 느낀다.”며

“2016년 10월 화동초에서 달성군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늘 세천·서재지역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본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인프라 부족, 과속·신호위반 차량 등으로 인한 학생 교통안전 문제,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버스노선 증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기된 문제들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석하신 분들의 협력과 역량을 집중해 적기에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 지속적인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분권이 보장돼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이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22일 (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 경기 연정의 한계와 과제 ▷ 현 지방자치구조 내에서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 ▷ 도민이 본 경기연정 평가 등 분야별 발제가 이어졌다.

양근서 연정위원장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의 주제로 진행한 발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근서 위원장은 “지방의원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방 상원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정의 철학인 분권, 협치, 상생, 협력이 일회성 정치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내각제, 지방상원형 양원제 등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연정실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연정이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정당화 시킨 부분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도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박상훈 학교장은 “연정에 참여한 정당은 명실상부한 통치정당이 되어야 하며, 경기도당이 그 역할을 할 만한 상근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가 끝난 다음 김달수 제 4연정위원장, 박완기 경기 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김창학 경기일보 정치부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 민생연정은 정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협력과 토론이라고 하는 협치의 모델을 선보이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7기 집행부와 10대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양성평등연구회, 성평등 의정활동」 워크숍

- 새로운 젠더 이슈의 동향 파악과 성 평등한 의정역량 강화 -

강원도의회 양성평등 연구회(회장 김금분 의원)는 2월 5일부터 2일간 성평등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2018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젠더이슈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성 평등한 의정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젠더이슈?, 모두를 위한 이슈!”라는 주제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집을 활용하여 강원도의 법령과 사업을 성 평등하게 이끌어온 성 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현황,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성 주류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 한편 1인 가구, 데이트 폭력, 독박육아, 여성혐오, 유리벽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젠더 이슈의 쟁점을 파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장인 김금분 의원은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기반강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경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1일(수)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의「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추진방향」,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선임연구위원의「경남 저출산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양해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진규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장,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례 경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진상원 경남 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이 참여하였다.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남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설명과 인구증가 정책에대한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김진규 정책연구부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강조하면서, 돌봄서비스 강화, 공교육 신뢰 회복, 마을 교육 공동체 건설 등을 제안하였다.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은 “2030세대에 맞춘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미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남 사립유치원 진상원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국공립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제공 및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성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기본은 보육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과 인건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해영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며, “정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책자문위원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자문위원) 채용을 위하여 지난 2월 2일 신규 채용공고를 하였다.

이번에 채용 공고한 전문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의 채용규모는 3명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인문사회과학분야로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토목공학 관련 전공자,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문화·관광분야 문화예술·문화재 전공자로

각 부분 공히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 취득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 선정은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채용공고에 따라 오는 2월 14일 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중에 임용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이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하천법

[시행 2019.2.21.] [법률 제15405호, 2018.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제7항”을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2.10.] [대통령령 제28630호, 201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임차인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임차권을 불법 양도·전대한 임차인 정보의 통보 업무를 추가하며, 해당 임차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 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제61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확인”을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요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자료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2.21.] [법률 제15395호, 2018.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제5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 인력기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방법·절차·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제37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6조제4항 중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를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2.20.] [대통령령 제28658호, 2018.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효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며,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과 이를 위한 자료 확인·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의견18-0017, 2018.1.29., 경기도 수원시]

【질의요지】

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함) 제10조 제1항에서는 수원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이하 “생활폐기물처리”라 함)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원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목과 책임은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이 대행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그 명목과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 11-0150 참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대행 외에도 위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행계약에는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계약의 사무의 소관 부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은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민간위탁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인바, 해당 사무처리 담당자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회계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회계관직공무원 중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시장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지출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회계법」 제46조에서는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수원시회계규칙”이라 함)은 수원시의 예산, 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수원시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본청의 재무관”을 일자리경제국장(라목)으로, “분임재무관”을 회계과장, 담당관 및 각 과장, 단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마목)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추정금

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제1호),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제2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제3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4조제1항에서는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 사무는 수원사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사무의 소관 부서를 폐기물관리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사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므로 이와 별도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년 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